

의안번호	2209901
의 회 인	강민국 의원
회 답 일	2025. 4. 15.
추계번호	25A213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의)	“국내복귀” 및 “국내복귀기업”의 기준 완화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	의무규정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기준 완화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내복귀” 및 “국내복귀기업”의 정의에서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에서도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
- 현행법 제2조제3호 가목1)은 “국내복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같은 조 제4호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정의에도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일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7조3)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것이 요구됨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요건에서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 및 조세 지원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증가하여 재정 지원(국내복귀투자보조금) 및 조세 지원(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①입지·설비 투자액 및 이전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②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을 위해 자본재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③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 [참고자료 1]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현황
 - * [참고자료 2] 국내복귀기업 국세 감면 현황⁴⁾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경우 감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음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24.1.1.부터 시행되어 현재 감면실적에 대한 자료 없음
 - 지방소득세 감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하고 있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감면 현황을 산출할 수 없음

[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주요 재정 및 조세 지원 현황

구분		지원 내용
보조금		· 지원 항목: 국내복귀투자보조금* * 사업명: 투자유치기반조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01-302)-국내복귀투자보조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법 제7조) · 지원내용 - 국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입지·설비보조금으로 지원 *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조건별로 투자금액의 21~45%(이 중 국비 보조율 40~75%) - 사업장 이전 비용의 일부를 이전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근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 보조금 산정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등
국 세 감 면	소득세· 법인세	· 조세지출 항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 · 수혜자: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부분 축소하는 경우 등 · 수혜내용 - 2027.12.31.까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시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 - 2027.12.31.까지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7년간(수도권 이전은 3년간) 100%, 3년간(수도권 이전은 2년간) 50% 세액감면 · 지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등 · 적용기한: 2027.12.31.
	관세	· 조세지출 항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 수혜자: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부분 축소하는 경우 등 · 수혜내용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시 2027.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100% 관세 감면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2027.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50% 관세 감면 · 지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등 · 적용기한: 2027.12.31.
지 방 세 감 면	취득세	· 조세지출 항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수혜자: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 수혜내용: 2026.12.31.까지 50% 취득세 경감 · 지원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등 · 적용기한: 2026.12.31.
	재산세	· 조세지출 항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수혜자: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으로 직접 부동산을 사용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 수혜내용: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75% 재산세 경감 · 지원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등의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과 조세지원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 확대와 기업별 지원액 또는 조세감면액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부담 규모 산출 불가능
 -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복귀 수요 확대분과 보조금 지원 단가 변화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함
 - 현행법상으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의 수(수요 확대분)가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현행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중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⁵⁾, 이 경우 기업의 투자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단가를 기존과 다르게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조세감면 항목 중 관세의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내복귀기업의 자본재 도입 수요에 대한 전망 또한 필요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해당 기업의 해외사업장 유지 수요, 국내복귀 수요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른 보조금 단가 및 조세감면액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
 - 특히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경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원 기준이나 단가, 한도 등이 정부의 재정 여건 및 재원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비예산으로 편성된 국내복귀투자보조 사업은 투자보조금(입지+설비보조금)과 이전보조금으로 구성됨. 이 경우 이전보조금은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물류비, 해체·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의 여건별로 보조금 지원 단가가 다르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국내복귀” 및 “국내복귀기업”의 정의에서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에서도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과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국내복귀기업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지원 대상 기업 수	보조금 총액	국비		지방비
2020	4개사	49,882	37,412	12,471	
2021	7개사	60,754	37,340	23,414	
2022	10개사	129,405	93,291	36,114	
2023	12개사	166,915	123,595	43,320	
2024	7개사	114,410	84,646	29,764	
합계	－	521,366	376,284	145,08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2] 국내복귀기업 국세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법인세	
	신고 법인 수	금액
2019	5개	829
2020	4개	154
2021	5개	279
2022	5개	751
2023	5개	1,222
합계	—	3,235

주: 1. 소득세는 감면 실적 없음

2. 관세의 경우 의원실에서 요청한 회답 기한 내 확인 불가함. 참고로, 2021~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라 억원 단위의 감면실적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연도별로 2019년 1억원, 2020년 0.3억원, 2021년 7억원, 2022년 0.2억원, 2023년 3억원임

자료: 2020~2024년 국세통계연보